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Audit System

박종관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Jong-Gwan Park(633127@hanmail.net)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부 감사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이 많다. 둘째, 자치단체 감사조직 및 기구의 측면에서 독립성이 미비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넷째,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의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단일화, 지방감사에 관한 법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감사기관장의 직급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결과 조치의 실효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의 공개,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감사제도 | 중복성 | 내부감사시스템 |

Abstract

Audit system of local self-government has a problem in many sector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mprovement of these issues is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present problems by looking at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audit system. The problem with local governments audi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non-efficiency and redundancy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t exist. Second, in terms of audit organization and mechanism of local government, independence is deficient. Third, the expertise is lacking in terms of audit personnel. Fourth, it is insufficient effectiveness ensure regarding the processing of the Audit Office at the time and results.

Improvement plan of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audi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unification of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audit an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legal system on the local audit. Secon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internal audit mechanism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internal audit mechanism. Third, introducing a variety of personnel system related to the human resources of audit personnel and there is a need and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 audit personnel. Fourth, the public of the audit, community participation, and etc results in the effectiveness and democratic ensuring of audit.

■ keyword : | Audit System | Redundancy | Audit Personnel |

* 이 논문은 2015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것임

접수일자 : 2015년 07월 30일

수정일자 : 2015년 08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8월 13일

교신저자 : 박종관, e-mail : 633127@hanmail.net

I. 서론

지방자치가 실시 되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을 지방 스스로 다스리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기능의 위임 뿐 아니라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문제나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 국회, 지방의회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는 크게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로 나뉜다. 외부감사로는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상급자치단체 감사가 있다. 내부감사로는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감사가 있다. 이러한 이 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도모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는 자치단체의 제반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상당부분 중복성을 띄고 있으며, 지나친 감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 감사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제2장에서는 감사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3장에서는 현 감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감사제도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5장에서는 위의 분석들을 통한 감사제도의 다양한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감사제도의 발전방안 등을 결론으로 제안한다.

I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개념과 목적

‘감사’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거 임명된 감사인이

조직체의 제반활동, 회계 등 부여된 감사범위에서 설정된 판단기준 아래 독립적으로 제반 정보, 자료, 기록 등을 수집하고 평가, 확인, 분석하며 증거에 의거하여 입증된 조사결과를 보고·처리하는 체계적인 처리과정이다[1][2].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해당 자치단체와 그 소속직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활동의 합법성 및 적정성 확보를 통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먼저, 정책적 적합성을 한층 확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제반적 자원을 경제적·효율적·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직무를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규명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감사가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의 비리와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부정을 적절하게 척결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으로써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첫째, 감사시스템의 개선과 관련된 연구는 광준열(2000)[3], 박종구(2001), 이상욱(2003), 문호승(2002) 등이 있다. 문호승은 효율적 국가감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의 연계를 강조하고 공공책임성의 관점에서 성과지표, 모범사례, 공개, 개혁모델지향, 감사의 학문적 기초를 확립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4].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지방화시대의 감사체계를 개선하고 감사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경기개발연구원(2001)[5],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2001), 하상군(2004), 권영주(2004)[6], 오영균·김용훈(2006) 등이 있다. 대체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문제점으로서 국정감사의 폐해, 지나치게 많은 중앙정부의 감사, 자체감사의 형식성, 주민감사의 미약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감사시스템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효율화 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성과감사에 관한 연구는 류춘호(2003), 김태운(1998) 등이 있다. 류춘호(2003)는 성과감사에 따른 감사영역의 확대 문제, 김태운(1998)은 성과감사 운영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7].

넷째, 구체적인 감사제도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위해 해외 감사제도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연구로는 감사원(1995), 경기개발연구원(2002), 안영환(2004) 등이 있다. 이들은 개별 국가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국가간 비교연구 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한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점이 있다[7].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와 관련된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곽준열(2000), 박종구(2001), 권영주(2004), 하상군(2004)[8], 송건섭외(2009), 공감법 도입이후 자체감사 관련 연구로는 이태종 외(2010), 송석록(2010), 김남철(2010)[9], 방동희(2011)[10], 신민철(2011) 등이 있다. 신민철(2011)은 감사기준의 역할 및 지침의 구체화, 통합된 감사절차 내지는 구체화된 감사유형을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3. 자체감사의 분석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의 확보가 필요한가 라는 문제에서 선행연구는 크게 독립성, 전문성, 중복성, 협력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독립성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병천(2009)[11], 이주희(1998), 송건섭(2002), 윤성식(2004)이 보다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은 당해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윤성식(2004), 이영조(1999), 공병천(2009), 송석록(2010) 등이 보다 강조하고 있다[12]. 셋째, 중복성은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중첩적(overlap)으로 수행되는 현상으로 송건섭(2002) 등이 강조한다. 자치단체는 국회,

감사원, 행정부처, 중앙정부, 지방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음으로 인해 중복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협력성은 적절한 역할분담 및 감사협력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 적절한 역할분담을 위해서는 국가, 광역, 기초 감사기능 분화 등을 통한 계층감사의 실시 등이 제안되어왔다¹⁾. 감사협력체제는 감사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구축할 수 있으며, 감사원과 단체인 상호협력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3].

표 1. 자체감사에 있어 실효성 확보 기준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감사가치	핵심가치	관련 문제
독립성, 전문성 (공병천,2009)	독립성	-조직 독립성 미비 -조직 위상 취약 -신분 독립성 미비
독립성 (이주희,1998)		
독립성 (송석록,2010)	전문성	-인력의 전문성 -충원방식 문제 -일반직 공무원 문제
자체감사의 전문성, 독립성 및 정보생산구조 (윤성식,2004)		
감사기관의 독립, 감사담당관의 전문성, 정보의 공개성 및 주민과의 근접성 (이영조,1999)	중복성	-법령의 중복성 -제도상 중복성
자체감사의 중복성 해소, (송건섭,2002)		
자체감사 점유비중의 중복성, 감사기구의 자율성, 감사인력의 전문성 (하상군,2004)	협력성	-기관간 역할 분담 -감사협력체계 구축
감사원칙 및 감사범위 규정, 독립성, 전문성, 자체감사에 대한 지원 (김남철,2010)		
독립성, 전문성 (허명순 외,2010)	실효성	-결과처리 민주성 -처리결과 실효성

자료 : 오영균(2012)을 활용 재구성[14].
* 선행연구와 핵심가치의 간은 일치하지 않음

III. 지방자치단체 대한 감사체계와 조직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와 법적 근거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이 가능하다. ‘내부감사’는 ‘자체감사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실, 기획감사실, 감사관 등이 시행하며, ‘외부감사’는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및 기타 중앙부처의 분야별 ‘행정감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도가 시·군·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상급자치단체로서 시·군·구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1) 역할분담을 위해서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 즉, 자체감사를 통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직무감찰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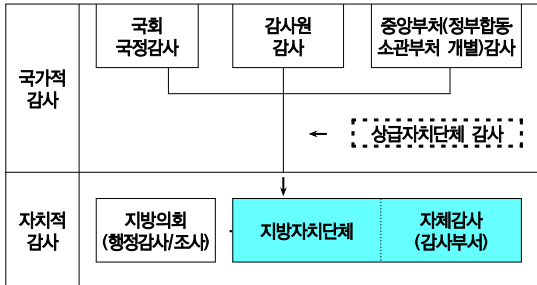


그림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감사체계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2007), 연차배(2010)[15]

표 2.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의 법적 근거

주체	종류	내용	주기	법적 근거	
국회	국정감사	소관상임위원 관련정책	1년	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국정조사	특위나 상임위원 특정사안조사	수시		
감사원	재무감사	회계사항	1-3년	헌법, 감사원법	
	기관운영감사	회계사무 등 종합사항			
	성과감사	특정사업 등의 성과	수시		
	특정감사	특정사안 및 직무감찰			
행정부처	정부합동종합감사	국가위임사무, 자치사무(법령위반사항), 회계 및 정책	2년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부분감사	부처 업무계통	수시		
	수시감사	취약업무 및 기강	수시		
	대행감사	감사원이 대행요청 및 위탁한 사항	수시		감사원법
	기강감사	직무감찰(총리실)	수시		국가공무원법 등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국회 직접 감사사항 제외) 전반의 정책	1년(10일)	지방자치법	
	행정사무조사	특정사안	수시		
	결산감사	세입세출 결산	1년(20일)		
자치단체	자체감사	자체 업무회계 및 직무감찰	수시	행정감사규정, 조례 및 감사규칙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2), 연차배(2010)[15]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여러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감사 주체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첫째, 국회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제2호와 제4호 및 제7조의2,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등이다. 둘째,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와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제24(감찰사항) 제1항 등이다.²⁾ 셋째, 중앙부처 등이 행하는 행정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67조 제1항, 제171조, 제175조와 행정감사규정 제2조, 제15조의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 등이다. 넷째, 지방의회의 감사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1항과 제3항의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동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동법 제134조(결산)의 ‘지방의회의 결산확인 권한’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는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범위·감사대상기관·감사종류·운영절차·감사공무원의 자격 및 특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감사규칙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행되고 있다. 여섯째, 기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들이 수행하는 자체감사는 2010년 7월부터 발효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에 두고 있으며, 2010년 10월부터 자체 내부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조직 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감사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조직구조(조직내 위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조직은 자치단체장과 부자치단체장에 예속되어있는 실정이다. 즉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역시의 경우는 시장 - 부시장 - 감사관실로 이어지고 도의 경우는 도지사 - 부지사 - 감사관실로 이어진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도 이러한 유형의 감사조직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체감사기구를 완전히 독립성(중립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과 관리능력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16].

다음으로 조직구성 측면에서, 감사실내의 조직은 서

2) 헌법 제97조에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국가(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울시의 경우 1감사관 2담당 12개 팀인 반면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1감사관 5개 내외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조직도 빈약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인력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은 인력의 수량 측면에서도 다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즉, 서울시는 본청 정원의 5.3%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 3.5%, 대구 3.4%외에는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2.5% 내외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인력의 수량 측면에서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조직은 단체 내 조직위치(구조) 측면에서, 조직구성측면에서, 인력측면에서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감사와 관련된 다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감사

제도의 개선이 실효성을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

1) 법령 및 제도적 문제점 : 중복성, 자율성

우선 감사관계법령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중복성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법령은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감사주체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중복감사 문제발생 한다.

먼저, 국정감사의 문제이다. 국정감사는 감사범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게 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사무도 감사대상에 포함되

표 3. 지방자치단체 감사조직구성 현황

시·도	감사공무원 정원	본청공무원 정원	비율	조직 내 위치	감사 조직 구성
서울	148	2,813	5.3%	시장 ↓ 부시장 ↓ 감사관실	1감사관 2담당 15팀 · 감사담당 : 8개팀(감사총괄팀, 감사1, 2, 3팀, 기술감사팀, 기강 감사팀, 안전감사팀, 시민감사팀) · 조사담당 : 7개팀(조사총괄팀, 조사1,2,3,4팀, 기술조사팀, 윤리사무팀)
부산	41	1,721	2.4%		1감사관 6개 담당 · 총괄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직무감찰담당, 민원감찰담당, 기술감찰담당, 공직윤리담당
대구	38	1,119	3.4%		1감사관 5개 담당 · 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기술감리담당
인천	25	999	2.5%		1감사관 5담당 · 감사1,2,3, 조사1,2 담당
광주	21	923	2.3%		1감사관 4담당 · 감사, 회계감사, 기술감사, 조사 담당
대전	22	885	2.5%		1감사관 5담당 · 총괄감사, 회계감사, 기술감사, 직무감찰, 공직윤리담당
울산	20	870	2.3%		1감사관 3담당 · 감사1,2 조사담당
경기	35	1,205	2.9%		도지사 ↓ 부지사 ↓ 감사관실
강원	32	913	3.5%	1감사관 6담당 · 감사기획, 회계감사, 기술감사, 직무조사, 법제, 송무담당	
충북	22	818	2.7%	1감사관 5담당 · 감사, 회계감사, 기술감사, 조사, 공직윤리담당	
충남	25	967	2.6%	1감사관 6담당 · 총괄, 회계, 기술, 감찰, 공직윤리 담당	
전북	24	952	2.5%	1감사관 5담당 · 감사, 기술감사, 조사, 감찰, 공직윤리 담당	
전남	26	987	2.6%	1감사관 5담당 · 감사, 회계감사, 조사, 기술감사, 공직윤리담당	
경북	25	963	2.6%	1감사관 5담당 · 감사, 회계감사, 공직윤리, 기술감사, 조사 담당	
경남	28	1,014	2.8%	1감사관 4담당 1팀 · 감사, 회계감사, 기술감사, 조사 담당, 클린공직팀	
제주	14	576	2.4%	1감사관 4담당 · 감사, 조사, 심사평가, 공직윤리 담당	

자료 : 오영균(2005) 자료를 재구성[16].

어 있어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감사가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감사원 감사이다. 감사원감사는 감사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정밀감사에 한계가 있다. 수시로 성과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원 감사준비와 수감에 따른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와 별개로 자치권을 가진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에 대한 감사 등의 실시로 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을 침해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중앙부처(정부합동감사)나 상급지방자치단체 감사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중앙부처나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부합동감사의 경우인사·조직·지방세 등 자치사무를 포함한 지방행정의 전 분야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사가 실시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합동감사 이외에 자치사무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 및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점검·확인 등 감사 유사활동도 수시로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감사이다. 지방의회의 감사는 정기회 회기일수 중 감사기간을 한정 규정하여 기간을 의식한 행정내부감사나 서류감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이에 대한 감사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나, 실제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감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그리고 감사 및 조사기법의 미숙으로 인해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는 감사기관이 단체장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내부감사 부서가 그들의 임명권자인 단체장의 비위·부정 또는 변태지출 등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형태라 한계가 있다. 중앙감사와 자체감사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미루기식의 감사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어 감사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공감법이 실시된 후 자체감사에 대한 상당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또한 현행 감사체계는 내외부 감사주체별 혹은 부문

별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수행되기 때문에 협력성은 떨어지고 중복성은 강화되는 형태를 띠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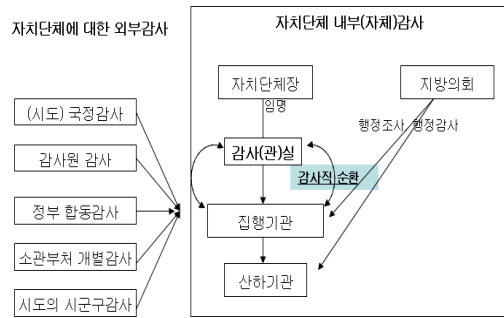


그림 2. 현행 지방감사 제도상의 중복성[17]

2) 조직 및 기구의 문제점 : 독립성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미비부분이다.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은 자체감사기구가 활동을 하면서 조직 내·외부 어떠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 감사관련 법규 등 일정한 기준에 의거 독자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사의 독립성은 자체감사 운영의 독립은 물론 신분상, 제도상, 독립을 포함한다.

자체감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근거미흡 하기 때문이다. 자체감사의 법적 근거인 「행정감사규정」이나 「지방자치법」 및 「자체감사규칙」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규정이 없다. 둘째, 자체감사부서의 조직상 위상이 취약하다. 광역시의 경우, 감사관의 직급이 부이사관(3급)인 본청의 실·국장보다 낮은 서기관(4급)으로 되었으나 공감법 시행 후 충청남도 등 일부 광역단체에서 개선되는 상황이다. 또한 내부감사의 본질적 업무인 자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한 감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독립적인 자체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아직도 독자적인 감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통합부서에 내부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다.³⁾ 따라서 자체감

3) 대다수의 군은 경우 감사와 기획이 통합되어 있는 실정이며, 시단위

사기구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셋째, 자체감사요원의 인사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요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집행부서로부터 충원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책임자에 대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⁴⁾. 즉, 감사관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기능상·직무상으로는 부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임기제에 의한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감사인력의 문제점 : 전문성 부족

첫째, 감사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대행정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감사수행을 위한 부문별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감사요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감사요원은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어도 감사일반에 관한 지식과 행정과정 및 감사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을 소유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자체감사인력의 충원 방식의 문제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인력 중 감사기관의 장은 자치단체 소속 또는 외부직원에 대한 직위공모(광역자치단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활용하거나 인사부서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보다는 인력운용과 보직경로 등이 강조되기 때문에 감사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셋째, 감사부서 일반 공무원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배치된 일반 공무원들은 감사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감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2년간의 전보제한기간이 지나면 다른 일반부서로의 전보를 희망하고 있어 경력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관 자체에서 효율성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체 전문감사인 양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사정보의 빈약, 감사기법 등의 전문성 결여로 성과감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4)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문제 : 실효성

첫째, 감사결과 처리의 실효성 확보 미흡이다. 감사결과에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은 감사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합법성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지적 내용이 관련 규정이나 절차 등의 위반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부당사항 등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성과감사 경우는 정책이나 사업이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혹은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의 중단이나 사업수행방법의 변경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결과에의 실효성 확보문제가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둘째, 감사결과 처리의 민주성 확보 미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전에는 자체감사부서에서 대부분 합법성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왔다. 향후 성과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하향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감사결과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상향적 방식을 통한 민주성 확보가 필요하다. 즉, 단체장이나 피 감사부서의 장이 결정한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능률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감사결과를 자체감사부서의 장이 제시할 경우 단체장이나 피 감사부서의 장이 이를 객관적으로 수용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불문처분하거나 가볍게 처리하기도 한다. 또한 추정·회수 등 시정요구를 하여야 할 사항을 아무런 처분 없이 간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성과감사의 경우는 상향적 방식에 의한 민주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5) 부정, 비리 적발위주의 감사

부정, 비리 적발위주의 감사정향도 문제이다. 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 실패의 적기 환류나 합리적 의사결정의 지원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행정성

는 감사를 독립부서로 분리하는 추세이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4) 일부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및 충청남도)의 경우 감사책임자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별도기구(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 달성 조장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행정잘못에 대한 권고, 지원 위주의 감사보다는 위압적이고 명령위주의 감사이다. 특히 공감법의 시행에 따라, 예방 위주의 일상감사를 지향하고 있으나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이를 개선해야 한다.

IV.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 감사관계 제도의 정비 : 중복성의 개선

첫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단일화이다. 지방의회와 감사·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시·도와 시·군·구를 감사하는 것은 지방의 자율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권과 자율의 원칙에 따라 감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사관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외부감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권이나 징계권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처리를 인정하여 인사권자인 단체장에 의해 행사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도 있다⁵⁾. 즉,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비리적발이나 직무감찰을 외부감사기관이 아닌 독립성이 보장된 자체감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상급기관 등 외부감사기관은 성과 감사에 치중하게 한다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정의 통합성 확보측면에서 국가위임사무나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활동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나 지방의회, 주민을 통한 감사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등에 중복감사의 지양을 위한 단일감사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인회계사 등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여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감사에 관한 법률 체계 구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와 자체감사범위의 명확한 설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감사의 본질적 기능인 자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령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신이 수행하는 각종 행정 작용의 운영 실태와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분석하는 자율적 통제장치이며, 조직목표의 달성과 업무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이나 대규모 사업 등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주요 정책 및 대규모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본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지방의 자율성은 도외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정신에 부합하도록 감사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범위를 재검토하고, 정부간 관계변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한 지방감사의 기본원칙,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설치,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주민참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첫째,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이다.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려

5) 다만, 자치단체의 직무감찰은 감사원, 상급기관(총리실, 안행부, 광역정부 등), 자치단체 등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즉, 감사원이나 총리실은 중앙정부나 공기업만의 직무감찰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소속 공기업,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소속 공기업,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직무감찰 등의 방식으로 업무영역 분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상 지위와 구성형태가 중요하다.

먼저, 자체감사기구를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율권을 부여하여 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집행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관련된 모든 감사활동을 자치단체장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체감사기구의 직무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체감사기구를 부기관장 직속으로 두는 것보다는 기관장 직속에 위치하게 하며, 자체감사요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는 것보다는 자체감사 기구의 장에 부여하는 것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는 그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라는 점에서 자율과 분권의 원칙에 부합 된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정치의 장이기 때문에 감사가 정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감사기구가 지방의회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당적을 같이 하는 경우는 소극적 감사로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당적을 달리하는 경우는 감사권의 남발로 자치단체의 정상적 업무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다음으로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자체감사기구를 별개의 기관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은 지방자치 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피감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독립성이 확보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감사인력의 신분상 독립성 확보이다. 자체감사요원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감사요원이 감사사항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요원이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와의 관련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감사에 투입된 감사요원에 대한 통제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 및 자체감사요원의 임용방식을 달리 규정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⁶⁾. 즉, 자체감사기구의 장

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단체장과 같이 4년의 임기를 보장하며, 임용기간과 해임요건 및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불합리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감사부서장 및 감사담당자의 직급향상이 필요하다. 즉,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기관의 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집행조직의 부서장들과 같은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관의 장이 현재 4급에서 3급 국장급으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5급 과장급에서 4급 국장급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표 4. 자체 감사기관의 직급조정 방향

구분		현 재	지급 조정 후
광역	기관장	4급	3급
	팀장/계장	5급	4급
기초	기관장	5급	4급
	팀장/계장	6급	5급

3.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첫째, 감사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 도입이다. 먼저, 지방감사직렬 신설이다. 행정 및 행정통제,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 등 자체감사기관 구성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감사직렬 신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감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순환 보직하여 일시적으로 근무시키는 것보다는 감사직렬을 도입할 경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감사직렬 신설은 현행 순환보직을 방지하여 감사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교육, 경험축적과 공유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인사적체를 고려하여 복수직급제를 활용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시군의 인사이동을 고려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외부전문인력의 임용이다. 전문화된 행정전문분야의 감사를 위해서는 기존의 감사 인력 이외에 외부의 감사전문가를 충원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공인회계사, 변호사, 해당분야 교수, 감사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개

6) 현재 광역자치단체나 일부 시에서 감사기구의 장만 개방형 임용 형

식을 취하고 있다.

방형 임기제로 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을 계약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기존 감사요원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감사정보의 공유 등 감사 운영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감사부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자체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이다. 자체 감사요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요하다. 자체감사요원들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은 행정 분야별 감사기법 및 회계실무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1~2주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정규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감사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기관 발령시와 근무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감사관련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감사결과 조치의 실효성 및 민주성 확보

첫째, 감사결과의 공개이다. 감사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계획, 감사의 실시 및 결과를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감사의 실시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공직자의 부조리 등을 접수받아 감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감사결과의 적극적인 공개는 의회, 언론,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뿐 아니라 행정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둘째, 자체감사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확대이다. 자체감사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인바, 청구요건의 완화와 청구절차의 간소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주민감사청구의 상대방을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재결권을 갖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기구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5. 성과감사로의 전환

부정, 비리 적발위주의 감사정향의 개선도 필요하다. 즉, 현재의 감사관행인 행정잘못에 대한 권고, 지원 위주의 감사보다는 위압적이고 명령위주의 감사를 성과지향 감사로 개선해야 한다. 즉, 지방행정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 징벌하기보다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행정체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과감사 위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⁸⁾.

6. 종합

앞의 장에서 논의한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한 것이 [표 5]이다. 즉, 자치단체 감사의 실효성확보 기준인 중복성, 독립성, 전문성, 실효성, 적발 위주의 지표를 바탕으로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표 5.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 분	문 제 점	개선방안
중복성	-관계 법령의 중복성 -중복에 따른 감사의 비효율	-자치단체 감사 단일화 -지방감사법을 체계구축
독립성	-감사기구의 독립성 미비 -감사부서의 조직위상 취약 -감사요원 인사장 독립성 미흡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감사기관장의 직급상향 조정 -감사인력의 신분상 독립성 확보
전문성	-감사인력의 전문성 미흡 -감사인력 충원방식의 비적절 -감사부서 일반 공무원 문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도입 -자체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지방감사직렬 신설
실효성	-감사결과처리의 실효성 확보 미흡 -감사결과처리의 민주성 확보 미흡	-감사처리 결과 공개 -감사관련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적발 위주	-부정·적발 위주의 감사	-성과감사로의 전환

V. 결 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방정부 업무의 발전이 필요하다. 자치사무의 효율적 처리, 국가위임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기타 사무의 효율적 처리가 필

7) 다만, 감사청구의 남발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Ronell B.Raum and Stephen L Morgan (2001) 연구는 성과지향적 감사시스템의 구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18].

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단체의 문제나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 감사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 감사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 내외부 감사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이 많다는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 감사조직 및 기구의 측면에서 독립성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셋째, 감사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넷째,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의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부정, 비리 적발위주의 감사처리로 행정운영의 효율성이나 성과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관련 법이나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중복성을 완화시켜야 하는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단일화, 지방감사에 관한 법률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감사기관장의 직급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결과 조치의 실효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와 공개,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법률 개정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즉, 자체감사기구의 설치분야, 감사기구장의 독립성 보장 분야, 감사기구 장의 임용 분야, 감사기구 장의 자격 분야, 감사담당자의 임용 분야,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분야이다. 물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되어 개정이 필요한 법률로 지방자치법 등이 있다.

참고 문헌

- [1] Michael H. Granof, *Government and Non-for-Profit Accounting*, John Wiley & Sons, (1998).
- [2] 오영균, 김용훈, “분권적 지방감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2006.
- [3] 광준열, *자체감사의 활성화 방안*, 감사원 감사논집, 2000.
- [4] 문호승, “공공책임성과 감사”, 계간 감사2002 봄호, 감사원, 2002.
- [5]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정부의 성과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2001.
- [6] 권영주, “한국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1호, 2004.
- [7] 오영균, 김용훈, “분권적 지방감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2006.
- [8] 하상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 개선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8권, 제2호, 2004.
- [9] 김남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발전적 시행을 위한 공법적 과제*, 2010.
- [10] 방동희, “감사법의 행정법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법제 현황·문제상황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감사논집 감사원, Vol.17, pp.7-26, 2011.
- [11] 공병천, “공공감사법의 제정 필요성”, 계간·감사, 감사원, Vol103, pp.18-21, 2009.
- [12] 송석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개선 및 독립성 확보방안”, 『법학연구』충북대학 교법학연구소, 21-2, pp.93-124, 2002.
- [13] 송건섭,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감사준거와 방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서울행정학회, 제13권, 제3호, pp.185-206, 2002.
- [14] 오영균,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개념 및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12.
- [15] 엽차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AHP를 활용한 대안별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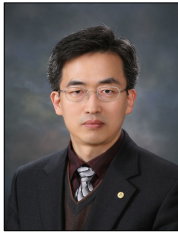
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10.

- [16] 오영균, "지방자치단체 감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서울행정학회, 제16권, 제2호, pp.321-340, 2005.
- [17] 안영훈,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부 발표자료, 2013.
- [18] Ronell B. Raaum and Stephen L. Morgan, *Performance Auditing : A Measurement Approach*,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Florida, 2001.

저 자 소 개

박 중 관(Jong-Gwan Park)

종신회원



- 2009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13년 현재 : 백석대학교 법정부 행정학전공 교수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 2008년 12월 ~ 2013년 2월 : 대통령소속지방분권위원회 실무위원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 2014년 3월 ~ 현재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2015년 1월 ~ 현재 : 한국행정학회 지역부회장
- <관심분야> : 구역개편, 성과관리, 사회자본, 정부기능